

정 보 공 개 서

나루에프엔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8061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8.07.0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6.02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 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38, 7층 701호(관양동, 동선빌딩) 전화번호:031-388-9270 / 팩스번호: 031-388-9271 naroofnb@naver.com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엠에프씨 멕시칸치킨 (MFC 멕시칸치킨)외 1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38,7층 701호(관양동,동산				관양동, 동선빌딩)		
나루에프엔비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 등록 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01.12.20	백승옥	031-388-9270		031-388-9271		
	법인 등록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3	34-12-5671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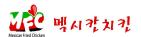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칭	MFC멕시칸치킨	" 멕시칸치킨 "으로 더 널리 알려진 브랜드
상호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 킨)OO점	
상표(서비스표)	Mexican Fried Chicken リムフナカフ	등록번호:제 40-1359747 (2018.05.14)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 본총 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42,259		
2023년				22,964		
2024년				25,465		

※ 당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로, 위 표의 매출액은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 상의 매출액을 기재하고 첨부하였습니다.

- 그 근거자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는 별첨[3]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려서ㅂ	ΛIZ	현 직위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조		연 역귀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백승옥	대표	2001.12~현재	나루에프엔비 대표	경영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검	임원-	2101人/명)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4년 12월 31일	1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5 / 39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나루에프에비 가맹사업 경영		2017 00 정계	나루F&B톰스(등록번호: 20170872)라
기정군구	나누에쓰엔미	가맹사업 경영	2017.08~현재	는 피자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 신청 여부 (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 자)	존속기간 만료 일 (가맹본부의 사 용기간)
(상표권)	영업표지로 사용 (귀하에 제공 하거나 귀하 가 당사의 승 인을 받은 간 판, 실사, POP 등에 사용 가능)	2018.01.03 출원 2018.05.14 등록	출원번호 40-2018- 0000880 등록번호 40-1359747	백승옥	2028.05.13 (10년)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 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 가맹사업 현황

1. 엠에프씨 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을 시작한 날: 2018년 2월 8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2001년 12월 20일)

※나루에프엔비는 엠에프씨 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직영점을 2001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2월 11일 까지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018년 2월부터 엠에프씨 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 본 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루에프엔비	MFC멕시칸치킨	백승옥	2001.12~2018.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리간2길 4,1층
나루에프엔비	MFC멕시칸치킨	백승옥	2018.02~현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38, 7층 701호(관양동, 동선빌 딩)

3.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업종

영업표지	업종					
M4CCM1713F2131	대분류	소분류 (주요상품)				
MFC멕시칸치킨	치킨	치킨, 폭립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단위: 개)

	2022.12.31.			2	2023.12.31.			2024.12.31.		
지역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 수	
전체	5	5	-	3	3	-	3	3	-	
서울	2	2	-	1	1	-			-	
부산										
대구									-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			-	
경기	2	2	-	1	1	-	1	1	-	



강원			-						
충북	1	1		1	1	-	2	2	-
충남			-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 전 3년간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7		2	-	-	5
2023	5	-	2	-	-	3
2024	3	1	1	-	-	3

6.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기	맹점/직영점의 <i>-</i>	수
一一世	 영화/이름	8 합표시	등록번호	11 0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나루에프 엔비	TOM'S A	20170872	피자	4/0	2/0	2/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2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4년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비고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 ㎡당	상한	면적 3.3 ㎡당	하한	면적 3.3 ㎡당	
전체	3	129,249	10,418	156,653	13,059	97,260	8,722	3곳산정
서울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_	-	-	-	-	-	_	-
대전	_	-	-	-	-	-	_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1	-	-	-	-	-	-	5점 미만
강원	-	-	-	-	-	-	-	-
충북	2	-	-	-	-	-	-	5점 미만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의 가맹점은 POS(Point of Sales)를 사용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 이외 다른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관계로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부가세제외)를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매출액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으로 추정하는 근거 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표지별 매출액을 구분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 당사의 가맹점1곳(광주탄벌점)은 기존 운영되는 매장에 숍인숍(Shop-in-Shop) 형태로 가맹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만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없어, 해당 매장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 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으며,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나루에프엔비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MFC 멕시칸치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3	1477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MFC멕시칸치킨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1)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	비고		
TE	구인 	기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49	(비공기)	-	
광고	소계		149	(비공기	-	
	31G	(비공개)	<u>श्रा</u> ष्ट	(धरुगा)	-	(धरग)

[※] 당사는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외에도 나루에프엔비톰스(나루F&B톰스)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위 광고비용은 해당 가맹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입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인덕원금융센터 지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45(평촌동)	031-425-524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 에[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합니다. 예치방법은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시어 작성한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시거나,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MFC 멕시칸치킨]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화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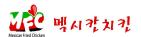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 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 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가입비	5,500	계약체결 시	개점 이후 반환되 지 않음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비용 소요	반환시 당사에 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3,300	계약체결 시	교육시작 1일 전 에 계약해지	운영노하우 등 전반적 인 영업기술이전	교육이 시작되 면 반환되지 않 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 보 증 금	3,000	계약체결 시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 사가 공급한 물품파손,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계약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 잔 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한
1 80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등	후에 그 잔액을 상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을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1,800



가입비	5,500
교육비	3,300
(현금)보증금	3,000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37,500				
인테리어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미 지정)	23,000	2,300		공사 전 계약취소	33㎡ 기준 (10평 기 준)
주방설비 및 집기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미 지정)	7,150	715	계약금(계약 시): 40% 중도금(공사	상품 미공급 시	
간판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미 지정)	3,850	385	중간일): 40% 잔금(오픈 3	공사 전 계약취소	
초도 공급상 품	협력업체	2,500	250	일 전): 20%	상품 미공급 시	
판촉물 등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미 지정)	1,000	100		개점 전, 판촉물 제작 전 계약취소	
별도공사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미 지정) 본사에서 공 사업체 미지 정시 자체조 달					막트, 간판 공사, 외부 공사, 화장 실공사, 철 거, 가스공 사, 전기증 설, 소방시 설, 정화조 공사, 냉난 방공사 등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에서 장비시설 비용은 점포 규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330천원(부가세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주체 및 선정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검사업자	가맹상담 →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등 시장분석(입점 가능한 점포의 설명 및 추천) → 최적의 입지 도출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 기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을 것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9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 ※ 물품의 상세 내역(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기기 등의 내역)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 가맹금 분납 제도

당사는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14 / 39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9.1)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880	매월 10일			영업표지(브랜 드) 사용대가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 용은 V.9.1) 참조		반환되지 않음	광고집행 후 반환되지 않 음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반환되지 않음	판촉활동 실 시 후 반환 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4%	지급 기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 지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mark>2024</mark> 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 당사는 제3자 물류 형태의 거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래품목(강제, 권장)을 가맹점에 직접 납품하거나 그 거래품목의 대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아, 차액가맹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실재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		문의: 나루에프엔비 체인사업
재고관리	글세세포 구성을 모시하여 성구 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부
	경 제고와 미교		(031-388-9270)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문의: 나루에프엔비 체인사업
회계처리		1년 1회	부
	회계조사 실시		(031-388-9270)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



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고 합니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 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종료 후의 부담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 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 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엠에프씨 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나루에프엔비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맹비(5,500천원, 부가세포함), 교육비(3,300천원, 부가세포함) 및 보증금(3,000천원)을 납입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Ⅳ.3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 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 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계약해지·종료 시 당사의 **영업표지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 귀하는 그 의무 불이행 기간** 에 대하여 1일 200천원의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MFC멕시칸치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원,부가세 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MFC멕시칸치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 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엠에프씨 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2) 당사는 엠에프씨 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치킨류(후라이드, 양념치킨, 매 운양념, 마늘간장, 바베큐치킨 등), 폭립세트 및 음료 등으로 가맹점에 개별 공지하는 메뉴	왼쪽에 기재된 이 외의 제품을 판매 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판매 제한되는 상품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 건 및 제한 3) 가맹점사업자의 가 격 결정의 제한 참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	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	--------------	--------	----



			1회 위반: 구두 경고	
경쟁업체 및 주류는	당사 및 당사의 지정	거래상대방 별로 기재	2회 위반: 2회 이상	
만 19세 미만 자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된 제품은 판매할 수	서면 시정요구	
(미성년자)	상품 및 제품	없음	3회 이상 위반: 계약해	
			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부가세 포함)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방법	비고
후라이드	20,000	월별로 또는 변경시 이메일 공지	2024년 12월 기준
양념치킨	22,000		
		"	"
매운양념	23,000	"	"
마늘간장	22,000	"	"
치즈스노우	22,000	"	"
바베큐치킨	22,000	"	"
매운바베큐	23,000	"	"
순살후라이드	21,000	"	"
순살양념	23,000	"	"
순살매운양념	24,000	"	"
순살마늘간장	23,000	"	"
순살치즈스노우	23,000	"	"
순살바베큐치킨	20,000	"	"
순살매운바베큐	21,000	"	"
다리만	22,000	"	"
날개만	22,000	"	"
다리날개세트	22,000	"	"
순살닭강정	23,000	"	"
순살매운닭강정	24,000	"	"
오리엔탈파닭	23,000	"	"
양념파닭	24,000	"	"
훈제치킨	18,000	"	"
순살베이크치킨	20,000	"	"
폭립세트1	22,900	"	"
폭립세트2	37,900	"	"



폭립세트3	33,900	"	"
폭립세트4	49,900	"	"
폭립세트5	35,900	"	"
폭립세트6	27,900	"	"
폭립세트7	30,900	"	"
폭립세트8	33,900	"	"
폭립세트9	38,900	"	"
스위트치킨그라탕	11,000	"	"
핫스위트치킨그라탕	12,000	"	"
치즈오븐스파게티	7,500	"	"
핫치즈오븐스파게티	8,500	"	"
꼬마골드피자	7,000	"	"
핫윙	7,000	"	"
치즈스틱	7,000	"	"
감자튀김	7,000	"	"
치킨텐더	8,000	"	"
콜라 1.25ℓ	3,000	"	"
콜라 500ml	2,000	"	"
스프라이트 1.5ℓ	3,000	"	"
스프라이트 500ml	2,000	"	"

당사는 시장상황, 소비자 및 경쟁업체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동일한 업종의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피자, 치킨 및 관련 제품을 전문 으로 판매하는 가맹사업	Mexican Fried Chicken Mexican Fried Chicken Mexican Fried Chicken Mexican Fried Chicken Mexican Fried Chicken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700m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700m 간격으로 설정.	
다만, 특수상권 (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 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 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 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 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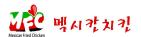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MFC멕시칸치킨'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인 판매 매 출 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	-	-	

- ※ 당사는 온라인 판매 정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 당사는 온라인 판매 정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엠에프씨 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1년**]입니다.

2)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제1항 제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제1항 제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 을 하지 못한 경우	제37조 제1항 제3호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7조 제1항 제4호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7조 제1항 제5호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제1항 제6호

4)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	제30조 제1항 제1호
무를 지체하는 경우	세20고 세18 세1호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제30조 제1항 제2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 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	제30조 제1항 제3호
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세기이고 세기양 세기호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30조 제1항 제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가맹점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	제30조 제1항 제5호
우	게이고 세18 세2포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0조 제1항 제6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제30조 제1항 제7호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30도 제1형 제7도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 받고 상당한 기	제30조 제1항 제8호
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세20도 세1일 세8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 우	제38조 제2항 제1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제38조 제2항 제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8조 제2항 제3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 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8조 제2항 제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 제2항 제5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 제2항 제6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8조 제2항 제7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제38조 제2항 제8호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8조 제2항 제9호

5) 계약수정의 사유, 사전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원 계약서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수정 사유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
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연장·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 당사의 서면 동의를 득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납입 후 교육수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5,500천원, 부가세포함), 교육비(3,300천원, 부가세포함) 및 보증금(3,000천원)을 납입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사항은 당사(나루에프엔비 체인사업부, 031-388-92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가맹점운 영권 상속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 (상속인 면담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여 부 통지 → 상속인과 가맹본 부의 가맹점운영권 상속 계 약 체결(5일 소요)	교육비, 보증금 납입 후 교육수 료
대리행사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 리행사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대리인 면담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 → 가맹점사업자, 대리인, 가 맹본부의 가맹점운영권 대리 행사 계약 체결(5일 소요)	교육비, 보증금 납입 후 교육수 료
업무위탁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업무위탁신청 → 당사 담당팀검토 (수탁인 면담포함, 30일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 가맹점사업자, 수탁인, 가맹본부의 가맹점운영권 업무위탁 계약 체결(5일 소요)	교육비, 보증금 납입 후 교육수 료

당사가 상속을 승인하면 상속인은 가맹점사업자(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맹비가 면제된다. 다만, 교육비(3,300천원, 부가세포함)와 보증금(3,000천원)을 납입하고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당사가 대리행사 또는 업무위탁을 승인하면 대리인 등은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대리인 등에 대해서는 가맹비가 면제된다. 다만, 교육비(3,300천원, 부가세포함)와 보증금(3,000천원)을 납입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 대리행사, 업무위탁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나루에프엔비 체인사업부, 031-388-92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MFC멕시칸치킨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피자, 치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신청 → 당사 담당팀	나루에프엔비 체인사업



을 판매하는 업종	검토 (시장조사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	부, (031-388-9270)
	→ 허가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MFC멕시칸치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2:00~24:00	주 6일 이상, 월 26일 이상	문의: 나루에프엔비 체인사업부, 031-388-
12:00 21:00	1 02 -10, 2 202 -10	927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질병 기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13 0171	l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중에서	점주의 부재시
1명 이상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나루에프엔비
매장 청결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수시	체인사업부
	서명 → 완료		(031-388-9270)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 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나루에프엔비
친절도			체인사업부
			(031-388-9270)
	담당자 매장방문 → 품질확인 → 관리		나루에프엔비
품질 관리	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수시	체인사업부
	→ 완료		(031-388-9270)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 기준

당사는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관크 서격	부담	비율	보다 저희	ШD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상품광고	50%	광고비의 50% /50% 중 가맹		
71-7	9.9.9.7.	30 %	점 총매출액 비 율 따라 산정	광고계획 공고 → 가 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가맹점사업자
광고 건체 행사	상품광고+가맹점 모집광고	60%	광고비의 40% / 40% 중 가맹 점 총매출액 비 율 따라 산정	결정 → 가맹점부담액 통지 → 통지된 날로 부터 7일 이내 입금	개인의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 불참 시 행사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시행 20일
	공동 행사	50%	50%	당사가 합리적으로 결	전까지 당사
판촉행사	개별행사	없음	100%	정하여 행사 시행 → 행사종료 후 최종분담 금 확정 → 확정된 날 로부터 7일 이내 입금	에 서면 통지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귀하가 물품대금의 연체,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위반, 영업비밀 준수의무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거 손해액을 당사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귀하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당사가 본 계약에 의한 교육의 대가를 받고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받은 금액의 2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당사는 귀하가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 3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⑤ 귀하가 가맹계약 상의 경업금지의무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각각 금오천만 원 정(₩50,0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⑥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당사의 과실 없이 귀하가 일방적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해지하거나, 점포 양도 등 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당사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잔여 계약기간 1 영업일 당 금 오십만원 정(₩500,00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⑦ 가맹점 사업자가 당사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 일천만원 정(₩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⑧ 귀하가 계약체결 이후 개점 전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한 위약금 규정에 따라 초기 가맹금에서 일정 부분을 상계처리 한 후 반환하게 됩니다.
- ⑨ 양 당사자 간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그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 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18%의 지연이자를 가산하게 됩니다.
- ⑩ 그 밖에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과정에서부터 가맹점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D-45	
점포개발 및 상권분 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IV. 가맹점사업자의 부 담
최종 협의	- 개설승인	D-34 ~ D-31	1. 영업개시 이전의 부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담 참조
가맹금 예치	- 신한은행 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D-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D-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8 ~ D-4(4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 대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 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①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② 간판교체 비용 ②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 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 본부 부담 비용비율	①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20% ②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40%
지급절차	①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②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 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①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②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 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시	계약이행, 표준화, 시장조사, 판촉, 가 맹점의 경영상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나루에프엔비 체인사업부 (031-388- 9270)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특별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 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 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 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 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 을 초과한 부 분에 한함)	문의: 나루에프엔비 체인사업부 (031-388- 9270)

4. 신용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소개, 음식가공,	집단강의	최초계약 시	필수교육
· 신규 포폭	입금방법 등	실습교육	(가맹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三十二五
보수 교육	신 메뉴 가공	시스코오	필요 시	피스코오
<u> </u>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교육실시 10일 전에 공지)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24시간 (1일 8시간 X 3일)	3,300	최초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실비 청구	필요 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불참할 경우에는 가맹점운영권의 제한사유 및 계약갱신의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나루에프엔비 체인사업부 (031-388-927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 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정보공 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인근 가맹점 현황 목록

별첨 [2]: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가맹본부 보관용 p41 절취)

별첨 [3]: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인근 가맹점 현황표 제공 확인서

(가맹희망자 보관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리스트를 정보공개서 및 관련 문서와 함께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 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No.	점포명	주 소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현황표 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인근	가맹점현	황표를
수령하였음	을 확인합니다.							

기때보다	•	α
가맹본부	•	(인)



별첨 [2]: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가맹희망자 보관용)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본인은 가맹본부 나루에프엔비로부터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정보공개서 (인 근 가맹점 현황 목록 및 기타 별첨 문서 포함)를 수령하였으며, 아울러 정보공개서에 대한 가맹거래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확인하였습니다.

수령내용

◈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정보공개서

별첨 [1]:인근 가맹점 현황 목록

별첨 [2]: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가맹희망자 보관용)

비밀유지확약

상기 본인은 당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이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받는 등 가맹점 창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무단 사 용하기 위해 유출, 복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과 아울러,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당사에 이 정보공개서를 신속히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잘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비밀유지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 · 오후)	시
정보공개서 수령장소				
가맹본부 대표(담당)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인			(인) 또는 (서명)	

^{*}위의 표의 빈칸 모두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가맹본부 보관용)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본인은 가맹본부 나루에프엔비로부터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정보공개서 (인 근 가맹점 현황 목록 및 기타 별첨 문서 포함)를 수령하였으며, 아울러 정보공개서에 대한 가맹거래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확인하였습니다.

수령내용

◈ 엠에프씨멕시칸치킨(MFC 멕시칸치킨)정보공개서

별첨 [1]:인근 가맹점 현황 목록

별첨 [2]: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가맹희망자 보관용)

비밀유지확약

상기 본인은 당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이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받는 등 가맹점 창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무단 사 용하기 위해 유출, 복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과 아울러,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당사에 이 정보공개서를 신속히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비밀유지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 · 오후)	시
정보공개서 수령장소				
가맹본부 대표(담당)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인			(인) 또는 (서명)	

^{*}위의 표의 빈칸 모두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별첨 [3]: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